

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5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.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폐지 이유

- 도설치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'88년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하며
-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초지의 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등 사안 발생시 운용하고 있으나 초지법상 2개 시군이상에 걸쳐 위치한 지역 이외에는 시.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어 충청북도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코자 함.

주요 골자

-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

관계 법령

- 초지법 제4조

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(충청북도조례 제1016호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